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9158
----------	-------

제안연월일 : 2019. 3.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2017.4.10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17.9.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 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2018.4.4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 심 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8.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2018.4.18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 심 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8.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2019.2.21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 심 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3.7.)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2019. 3. 8.)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9. 3. 11.)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9. 3. 11.)는 비용
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대책 수립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등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1호).

※ 부대의견

첫째, 정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미세먼지저감종합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

둘째, 정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조사를 바탕으로 재해·환경·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포함시키도록 할 것

셋째, 현재의 이분법적인 자연·사회재난 분류체계로는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난유형분류체계 개선의견을 3월 말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할 것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확산 등으로”를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 11. (생략)	<u>따른 미세먼지 등으로-----</u> ----- 2. ~ 11. (현행과 같음)
---------------	---